준법감시인 심사필번호 제2016-약관-321호(2016.4.26.)

**「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 특약」(구 외환은행)**

**제1조 적용범위**

**퇴직연금용 정기예금 재예치형(구 외환은행)(**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한다.) 거래시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**'예금거래 기본약관' (구 외환은행) 및 '거치식예금약관'(구 외환은행)**을 적용합니다.

**제2조 예금종류**

이 예금은 정기예금으로 운용합니다.

**제3조 가입기간**

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개월이상 60개월 이내에서 월,일로 정합니다.

**제4조 가입대상**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특정금전신탁의 수탁자로 합니다.

**제5조 가입금액**

이 예금의 최초 가입금액은 1원 이상으로 합니다.

**제6조 재예치**

① 거래처가 요청하는 경우, 이 예금의 만기일에 당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가산한 금액을 재예치합니다. 재예치기간은 당초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정하며, 재예치이율은 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 등 에 공시된 이율을 적용합니다. 다만, 최초 신규시 자동재예치를 신청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는 매 만기시마다 별도의 의사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
이 경우, 특약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한 운용지시서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
|  |
| --- |
| **-** 퇴직연금정기예금 재예치형 특약 -  퇴직연금정기예금 약관 제 6 조 ①에 따라, 동 예금의 매 만기일마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재예치하는 것으로 합니다. |

② 상기 ①에도 불구, 거래처가 재예치 의사없음을 사전에 통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재예치 하지 않으며, 거래처의 별도 의사표시에 따라 처분합니다.

**제7조 이자**

① 이 예금의 이율결정일은 예금일 및 매 재예치일로 합니다.

② 이 예금의 이율은 매 이율결정일에 영업점에 게시한 계약기간별 이율에 따라 변경 적용합니다.

③ 이 예금의 이자는 만기일에 셈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.

④ 만기일 이후 지급 청구할 때는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.

**제8조 중도해지이율**

①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예금주의 청구가 있을 때 지급함이 원칙이나 만기일 전 예금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예금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일 또는 재예치일에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하여 지급합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로 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에 영업점에 고시된 이 예금의 특별중도해지이자율로 셈하여 지급합니다.

• 특별중도해지 사유 및 적용 이자율

|  |  |
| --- | --- |
| 특별중도해지 사유 | 특별중도해지 이자율 |
| □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의 사유  □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1)  □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,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시  □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 □ 관련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□ 수탁자의 사임  □ 동일 자산관리기관 내 계약이전  □ 동일 자산관리기관 내 가입자 제도 전환  □ 가입자의 사망  □ 퇴직급여의 연금지급을 위한 KEB하나은행 내 교체매매  □ 연금형태의 지급 사유  □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하는 경우(개인형IRP에 한함)  □ 가입자의 해외이주(개인형IRP에 한함) | □ 계약기간 1년 미만 :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적용된 이 예금의 계약기간별 이자율  □ 계약기간 1년 이상  • 경과기간 1년 미만 : 신규 또는 재치일에 고시된 예금의 1년제 약정이자율  • 경과기간 1년 이상2) :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고시된 이 예금의 경과기간별 경과년수에 해당하는 이자율 |
| □ 퇴직연금수수료의 납부 | 신규 또는 재예치일에 고객에게 적용된 이 예금의 이자율 |

1)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

-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

-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

-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

-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 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

-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
-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

2) 경과기간별 경과년수 : 아래 예시와 같이 산정

예시) 경과기간 1년 이상 ~ 2년 미만인 경우 경과기간별 경과년수는 1년임

**제9조 분할해지**

① 이 예금은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. 다만, 확정기여형 퇴직연금

의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가입자별로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.

② 제1항의 분할해지 횟수에 퇴직급여를 연금 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인출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

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인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
③ 만기일 전 분할해지 하는 경우 분할해지금액에 대한 이자는 제8조에 따라 지급합니다.

**제10조 거래제한**

이 예금은 담보제공, 질권설정, 양수도가 불가하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할 수 없습니다.

**제11조 기타**

이 예금은 통장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.

<부 칙>

본 약관은 2016년 6월 7일 이후 가입하거나 이 예금이 재예치된 가입자부터 적용합니다.